

함되어 취득세가 신고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 시설물에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되는데 가산율까지 적용된다면 세액이 5~10% 높아지기에 성실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한 과세일 뿐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정책이 대두되는 속에서 녹색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친환경에 일조하는 IBS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적용시킨다는 것 자체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과세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녹색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범인세 등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IBS를 상기한 가산율 자체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자체별 세무공무원 판단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규제개혁이 실시되어야 하며, 최첨단 AI 인공지능 기술도입 및 친환경 정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계 체계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가. 감면의 필요성

IBS는 에너지 관리 효율성, 탄소배출 저감, 안전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녹색건축물과 유사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현재 녹색건축물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으나, IBS 건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능형 설비의 초기 설치 비용은 일반 설비보다 높은 반면,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는 상당하다. 이미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녹색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친환경 신기술을 적극 장려해야 할 충분한 정책적 동기가 된다. 또한, 정부의 AI 활성화 정책 방향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